

보도자료

2019. 12. 18.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사법지원실
담당자	사법지원심의관 이정목(☎02-3480-1368)
공보관실 ☎ 3480-1451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 개최

- 2019. 12. 18. 오전 10:30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오전 11:00 회생·파산위원회 제11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 위촉식

- 2019. 12. 18. 10:30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 이은재, 홍성준, 박재완, 정용석, 장경덕 위원 연임 위촉, 원영준, 박광 위원 신규 위촉하는 위촉장 수여
- 이로써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제4기 회생·파산위원회(2019. 11. 28.~2021. 11. 27.) 공식 출범

■ 제11차 정기회의

- 2019. 12. 18. 11:00 ~ 12:00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11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11차 정기회의에서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18년도 전국법원 도산절차 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 개인파산관재인 제도의 현황, 전국 도산재판부의 업무소통 방안을 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함

건의문의 주요 내용

- 전국적으로 개인파산관재인 후보자 선정이 통일적이고 균질한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도산절차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전국 도산재판부의 재판장 등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회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질 것을 권고한다.

□ 위원 위촉식

- 일시·장소 : 2019. 12. 18. 10:30 ~ 10:50 대법원 16층 무궁화실
- 조제연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 이은재, 홍성준, 박재완, 정용석, 장경덕 위원 연임 위촉, 원영준, 박광 위원 신규 위촉하는 위촉장 수여
- 이로써 제4기 회생·파산위원회(2019. 11. 28. ~ 2021. 11. 27.) 공식 출범(위촉장 수여 위원 임기 2019. 11. 28. 시작)
-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관 위원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변호사 위원	이은재	법무법인 광장 구성원 변호사
	홍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
대학교수 위원	박재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공무원 위원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전 성장지원정책관)
	박광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전문가 위원	정용석	전 KDB 산업은행 부행장,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학식경험 위원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실장

□ 제11차 정기회의

- 일시·장소 : 2019. 12. 18. 11:00 ~ 12: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보고안건 : ① 법원 도산실무 현황, ② 2018년도 전국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보고, ③ 법원별·연도별 절차관계인 평가 현황 보고, ④ 절차관계인 DB 구축 현황 보고, ⑤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
- 심의안건 및 의결안건 : 개인파산관재인제도 현황 점검 / 전국 도산재판부 업무소통 방안

□ 개인파산관재인 제도 현황 점검 설명

각 법원별 개인파산관재인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① 후보자 선정 위원회의 존부, ② 관리위원의 관여 여부, ③ 개인파산관재인의 임기, ④ 개인파산관재인에 대한 평정횟수 및 방법, ⑤ 후보자 명단 작성시기, ⑥ 회생·파산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사서류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개인파산관재인 후보자 선정절차의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균질한 개인파산관재인 선정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국 도산재판부 업무소통 방안 설명

전국 도산재판부의 재판장 등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회의 등을 개최하여 도산업무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국 법원 간의 업무 처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도산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참고 : 회생·파산위원회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경과

○ 개요

-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

적·통일적인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회생·파산위원회를 2013. 11. 28. 법원행정처에 설치

-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 제1차 정기회의(2013. 11. 28.)

- 관리위원회 실질화 방안 건의

○ 제2차 정기회의(2014. 4. 22.)

- 도산전문법원 설치 건의

○ 제3차 정기회의(2014. 12. 17.)

- 도산전문법관제도 도입 건의

○ 제4차 정기회의(2015. 6. 16.)

- 회생절차의 접근성·효율성 제고 방안 건의

○ 제5차 정기회의(2015. 12. 14.)

-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공정성 제고 방안 건의

○ 제6차 정기회의(2016. 6. 15.)

- 워크아웃 장점 도입 등을 통한 기업회생절차의 개선 방안 건의

○ 임시회의(2016. 10. 13.)

- 회생·파산위원회의 도산감독기능 활성화 방안 건의

○ 제7차 정기회의(2017. 12. 14.)

-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 제도 개선 방안

- 도산절차관계인의 이력서 및 평가표 양식 표준화 방안

- 회생·파산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제8차 정기회의(2018. 6. 28.)

-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

- 회생·파산위원회 감독기능의 효율화(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DB구축)

○ 제9차 정기회의(2018. 12. 21.)

- 법원 도산실무 현황, 서울회생법원 주요 활동사항,

- 채권조사확정재판 분리제도 점검, 도산절차관계인 선임시 고려사항

○ 제10차 정기회의(2019. 6. 27.)

-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평가제도 점검
- 개인파산 신청서류 간소화 검토
- 개인파산관재인 대리 및 외부 회생위원 대리 제도 점검